

## 국회의원(윤한홍) 징계안

|          |      |
|----------|------|
| 의안<br>번호 | 5740 |
|----------|------|

요구연월일 : 2024. 11. 20.

요 구 자 : 박성준 · 강유정 · 김남희  
김성희 · 김용만 · 김용민  
노종면 · 모경중 · 박민규  
백승아 · 부승찬 · 서미화  
송재봉 · 안태준 · 윤종균  
전용기 · 정을호 · 정준호  
정진욱 · 조계원 의원  
(20인)

### 주 문

국회의원(윤한홍)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그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한홍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며 공천에 개입한 음성파일이 공개된 다음날인 2024년 11월 1일 명태균씨의 지인인 경상남도 전 도의원 장○○에게 접촉해 명태균씨가 “내 마누라랑 장모와 전화하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화내는 녹취’,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미안하다”며 ‘사과 녹취’ 등 여러 녹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축소하거나 물타기 할 수 있는 특정 녹취를 공개하도록 회유하도록 하였음.

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녹취가 담긴 음성파일 공개를 전제로 명태균씨가 “나를 구속시키지 말라”며 불구속 수사와 경제적 지원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자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2024년 11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는 등 위증교사 및 증거인멸 뒷거래 시도도 서슴지 않았음. 이는 소위 윤택관이라 불리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과 비선 실세가 불구속을 조건으로 부당 거래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음.

라. 또한,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작 의혹,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및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개입 의혹, 창원 산단 관련 국정농단 의혹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는 시기에 명태균씨에게 회유를 시도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임.

마.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한홍이 명태균씨에게 특정 녹취를 공개하라고 한 회유 시도는 형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모해위증 교사죄,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범죄이자 악질적인 범죄이며, 또한 「국회법」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를 망각한 매우 심각한 행위임.

바.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한홍의 명태균씨 회유 및 뒷거래 시도는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행태는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을 모욕하는 행태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임.

사.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한홍은 「대한민국헌법」 제46조,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314조(업무방해)의 위반 소지가 있는 바,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